

인문치유 관광루트 명소화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2025. 06



진도군

제1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진도의 대표적인 인문 자원인 운림산방, 운림예술촌과 침찰산, 운림산림욕장의 자연에서의 휴식과 치유의 연계 관광루트 개발로 하루종일 머물 수 있는 체류형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자연과 함께 진도군 문화·역사·힐링 거점으로 조성하고자함
-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의 치유를 위해 숲속산방 치유숲을 조성하고 가족단위 관광객을 위한 기존 인문 자원(운림산방 등)과 자연치유 자원(운림산림욕장 등)을 연계하는 투어 프로그램 운영으로 변화하는 관광여건에 ‘인문+치유 관광루트 연계사업’을 통해 대응하고자함

1.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동법시행령 별표2

구 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협의요청시기
가. 도시의 개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같은 호 다목의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과 같은 조 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	○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군관리계획	- 용도지역 (변경) : 농림지역 → 계획관리지역(A = 33,451㎡) - 군계획시설 (신설) : 문화공원 신설(A = 62,423㎡)	

<표 1.2-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실시근거

구 분	내 용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장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사업계획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2. 토지이용구상안 3. 대안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1.3 환경부 소관법령에 따른 대상사업 해당여부

- 본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외에 환경부 소관법령에서 규정하는 대상사업 해당여부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조사됨.

<표 1.3-1> 타 법령(환경부 소관법령) 관련 대상사업 해당여부

구분	관계법령 및 기준	해당여부	비고
생태면적률 적용 대상사업	○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2,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의2	해당없음	-
자연경관영향 협의 대상사업	○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해당없음	-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	○ 환경보건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해당없음	-
수질오염총량 관리 대상사업	○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해당없음	-
연안육역 대상사업	○ 연안관리법 제2조	해당없음	-
온실가스 항목 해당사업	○ 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등 평가 지침	해당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사업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별표2]	해당없음	-

1.4 전략환경영향평가준비서 작성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2조

1.5 계획의 개요

가. 계획명 : 인문치유 관광루트 명소화사업

나. 사업예정기간 : 2025년~2027년

다. 공간적 범위

- 전남 진도군 의신면 사천리 569번지 일원

라. 계획수립기관 및 승인기관

- 계획수립기관(사업자) : 진도군(진도군수)
- 승인기관 : 전라남도

마.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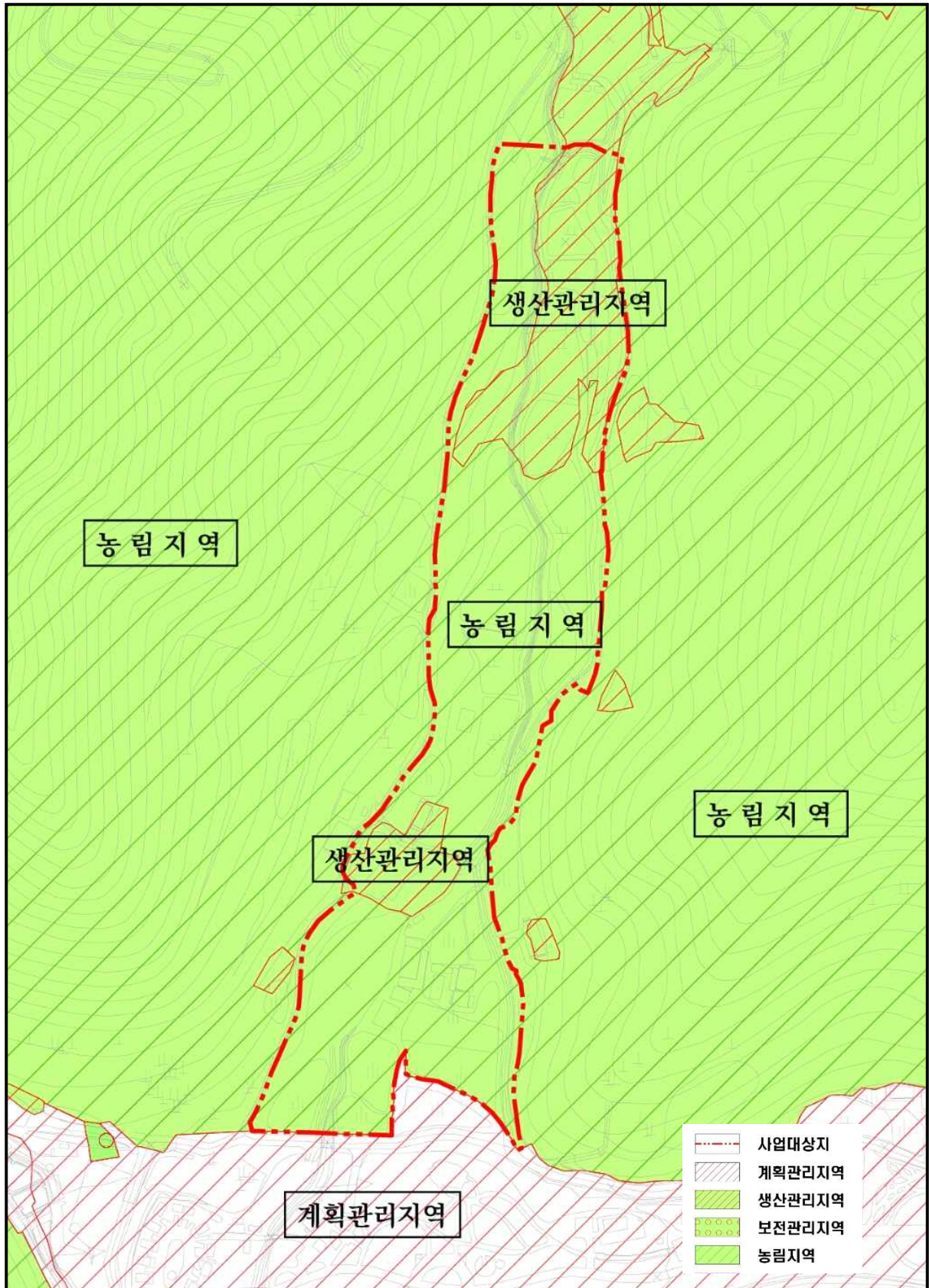
- 면적 : 62,423㎡
- 용도지역 변경 : 농림지역 → 계획관리지역(A = 33,451㎡)
- 군계획시설 신설 : 문화공원 신설(A = 62,423㎡)

<표 1.5-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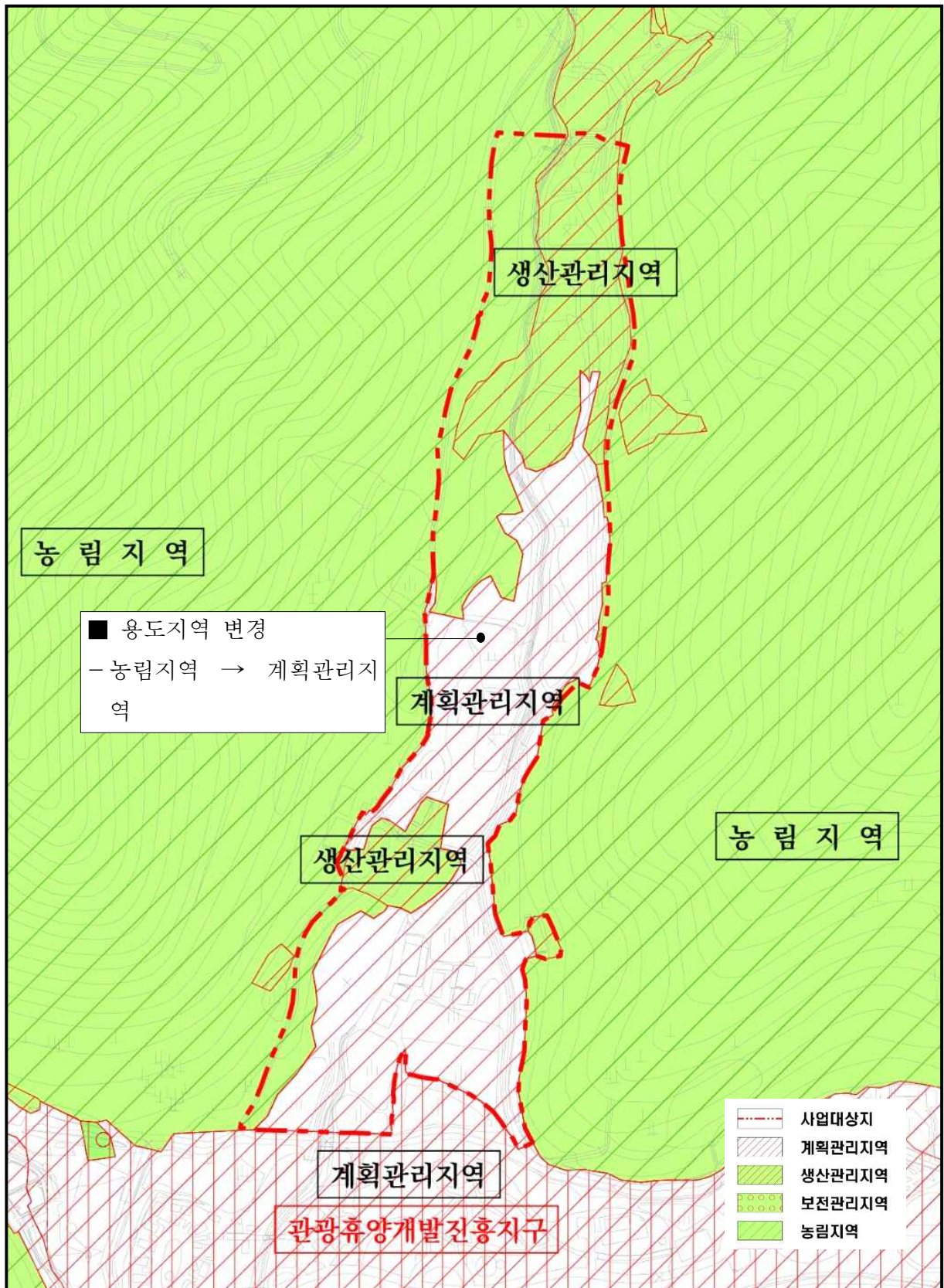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합계	62,423	-	62,423	100.0	
계획관리지역	-	증) 33,451	33,451	53.6	
생산관리지역	14,388	-	14,388	23.0	
농림지역	48,035	감) 33,451	14,584	23.4	

<표 1.5-2>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비고
		기정	변경		
-	진도군 의신면 사천리 569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33,451	○ 인문치유 관광루트 명소화 사업의 일환인 숲속산방 치유숲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그림 1-1> 용도지역 · 지구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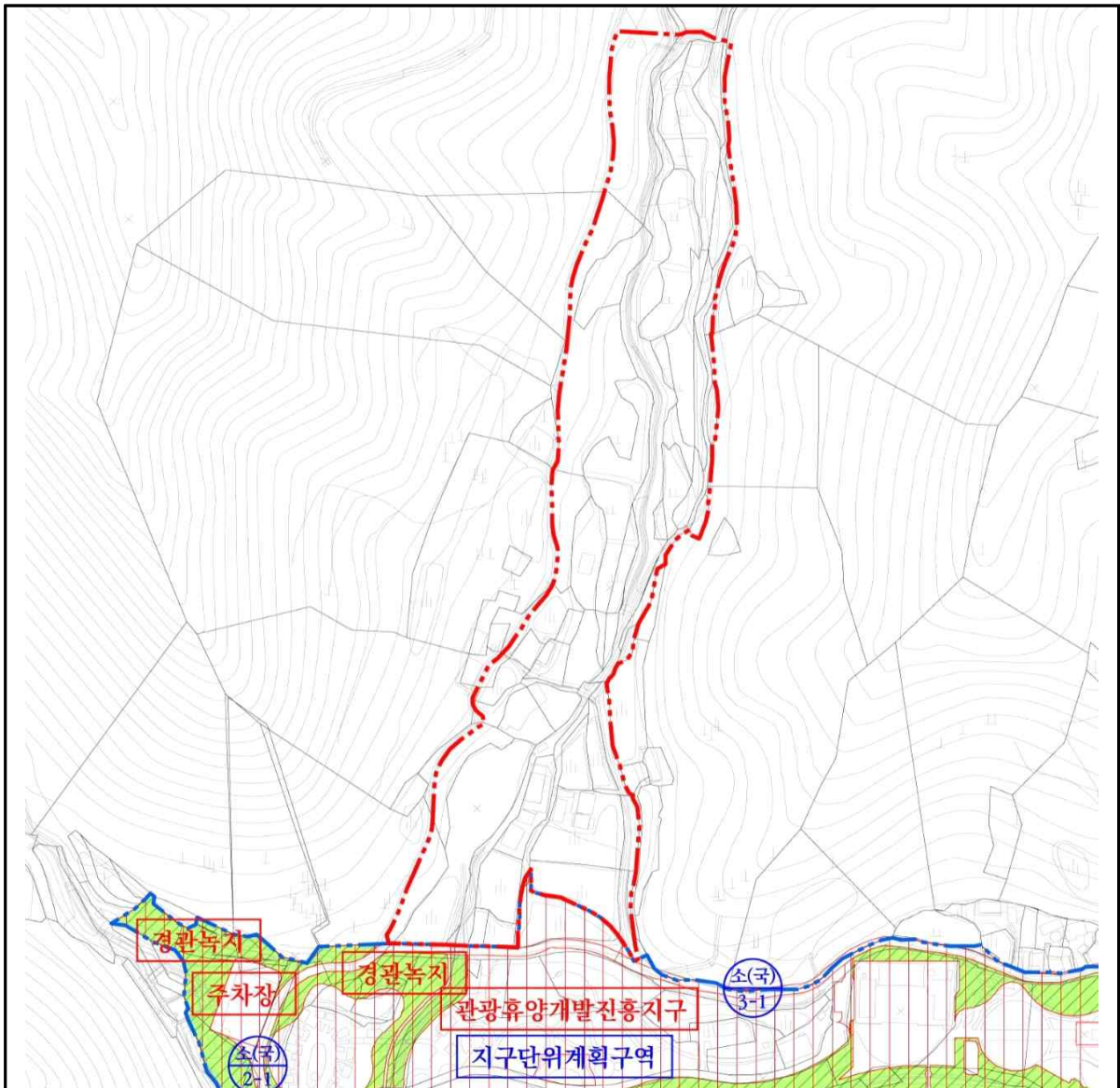
<그림 1-2> 용도지역 · 지구 결정(변경)도

<표 1.5-3> 공원결정(변경)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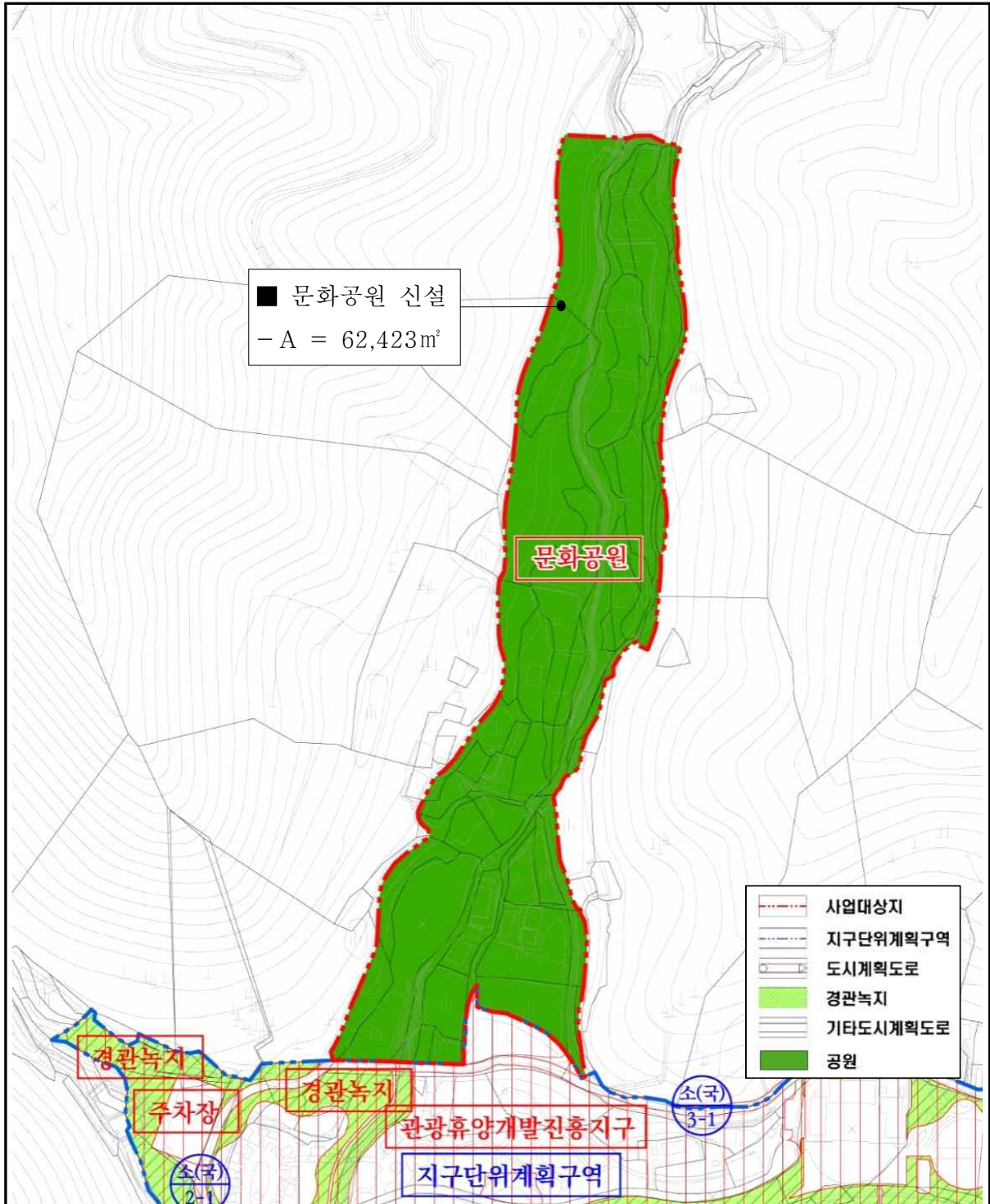
구분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용도지역			최초 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숲속산방 치유숲 공원	문화공원	진도군 의신면 사천리 569번지 일원	-	증)62,423	62,423	-

<표 1.5-4> 공원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비고
-	숲속산방 치유숲 공원	○ 문화공원 - A = 62,423㎡	○ 인문치유 관광루트 명소화 사업의 일환인 숲속산방 치유숲 조성을 위한 문화공원 신설



<그림 1-3>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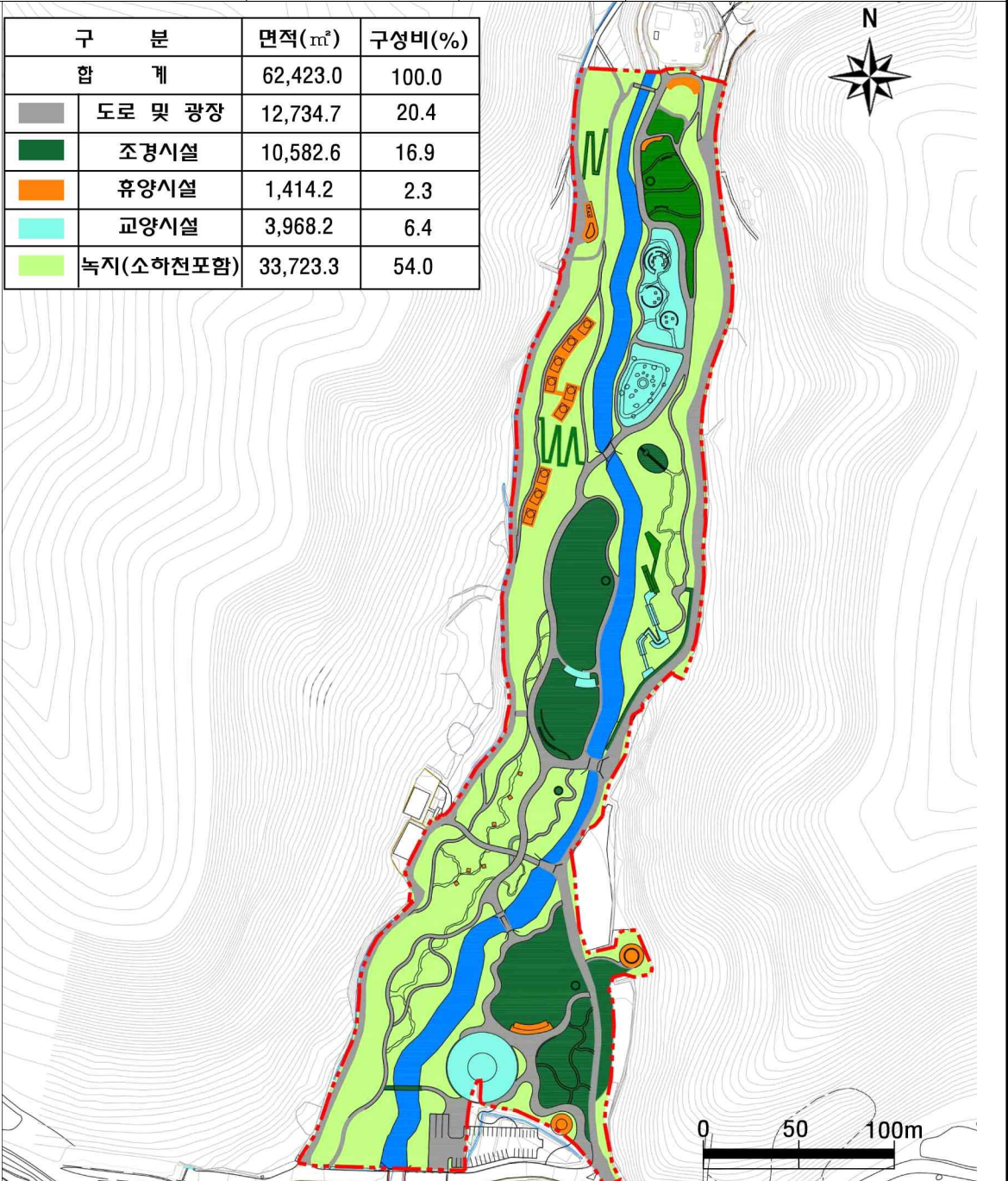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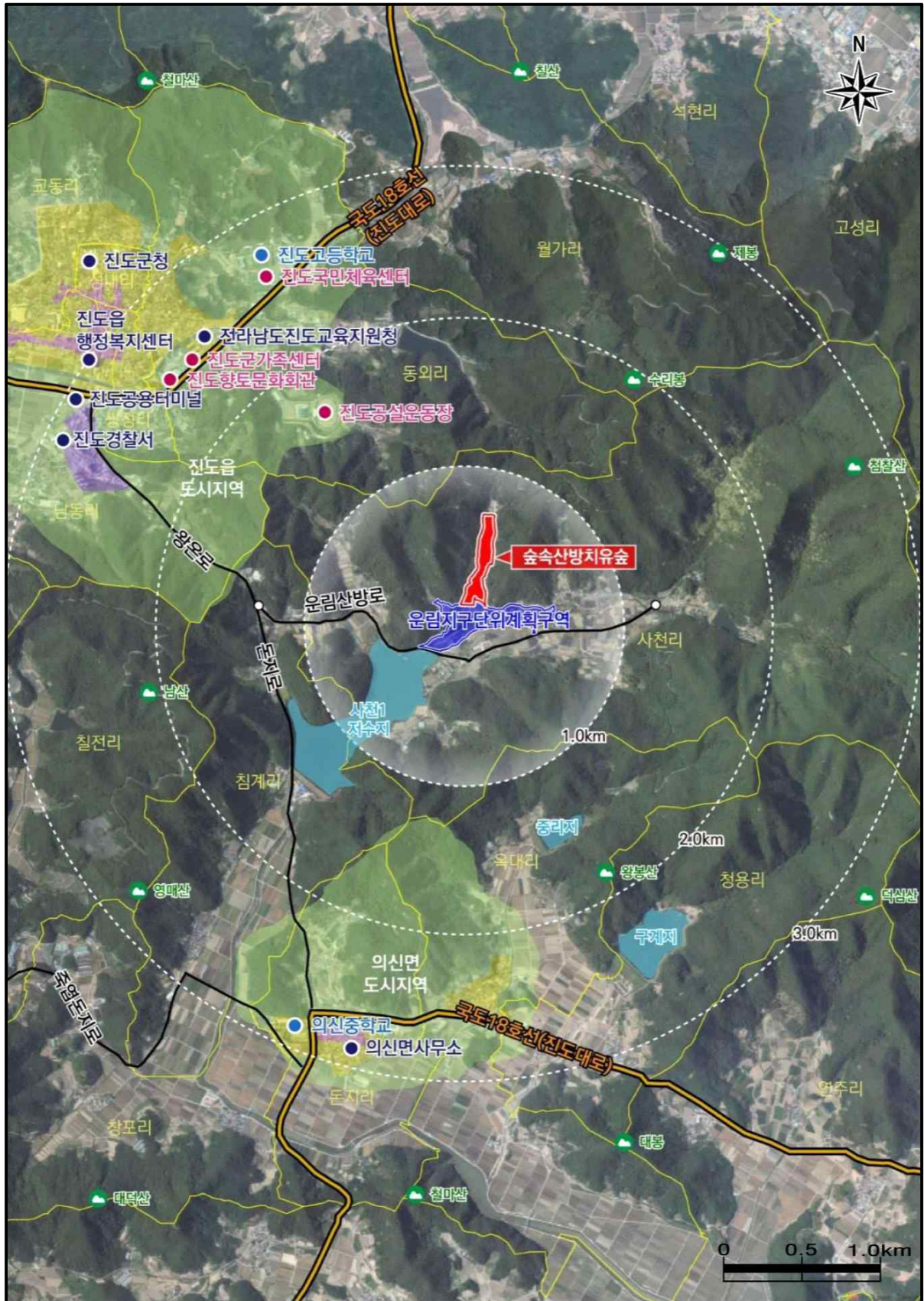
<그림 1-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바. 토지이용계획

구분	부지면적(m ²)	구성비	비고
합계	62,423.0	100.0	
도로 및 광장	12,734.7	20.4	
조경시설	10,582.6	16.9	
휴양시설	1,414.2	2.3	
교양시설	3,968.2	6.4	
녹지(소하천 포함)	33,723.3	54.0	소하천(6,537.4m ² 포함)

구분	면적(m ²)	구성비(%)
합계	62,423.0	100.0
 도로 및 광장	12,734.7	20.4
 조경시설	10,582.6	16.9
 휴양시설	1,414.2	2.3
 교양시설	3,968.2	6.4
 녹지(소하천포함)	33,723.3	54.0





<그림 1-5> 위치도

제2장 환경보전 목표의 설정

2.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환경영향평가법」 제5조(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에 의거하여 본 사업의 성격, 토지 이용 및 환경 현황, 환경에 미치는 영향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항목별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였음.

<표 2.1-1> 평가항목별 환경보전목표

평가분야 및 항목		환경보전목표	사유
1. 계획의 적정성			
가.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상위·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 인문치유 관광루트 명소화 사업과의 부합성 및 연계성 검토
나. 대안설정 분석의 적정성		-	-
2. 입지의 타당성			
가. 자연환경의 보전	1) 생물 다양성·서식지 보전	○ 중요 생물종 및 서식처 보존 ○ 생태자연도 1등급 및 별도 관리지역, 식생보전등급 I, II등급 지역 포함여부	○ 법정 보호종 및 보전가치가 있는 생물종의 서식처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 평가 필요
	2) 지형 및 생태축 보전	○ 가치가 높은 지형·지질의 보전 및 주요 산줄기 훼손 및 지형변화 최소화	○ 학술·문화·지형학적으로 보전 가치가 있는 지역 보전 및 고려 평가 필요
	3) 자연경관의 보전	○ 경관의 변화 ○ 스카이라인 변화 최소화	○ 계획시행으로 인한 기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평가 필요
	4) 수환경의 보전	○ 수환경의 보전	○ 보전가치가 있는 수환경의 보전 필요
나. 생활환경의 안정성	1) 환경기준 부합성	○ 환경기준 및 규제기준 유지	○ 환경기준을 유지·달성 가능 여부 평가 필요
	2)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발생 오수 및 폐기물 적정 처리 필요
	3)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폐기물 적정 처리	○ 계획시행으로 인한 발생 폐기물 적정 처리 필요
다.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1) 환경친화적 토지 이용	○ 토지이용 변화 최소화	○ 현재 토지이용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자연친화적인 계획수립 필요

제3장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3.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3.1.1. 대상지역 및 선정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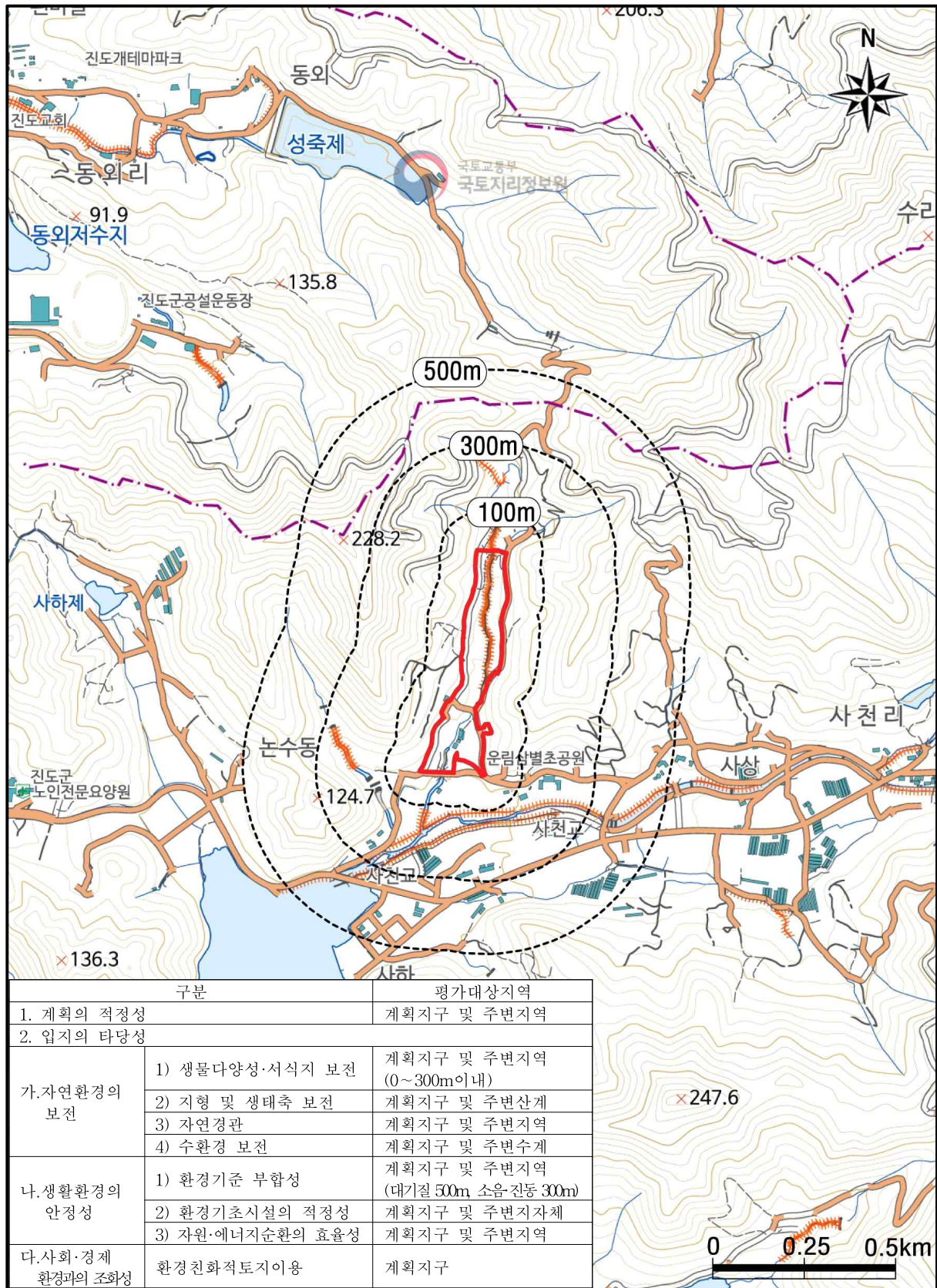
- 본 인문치유 관광루트 명소화사업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평가 대상지역은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으로 선정하였음.

3.1.2. 대상지역 설정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은 임야와 농경지(전·답)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계획의 수립으로 직·간접적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였음.
- 계획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환경부」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을 참고하여 설정하였음.

<표 3.1-1> 대상지역 설정근거

구 분	평가대상지역 선정 기준	대상지역	
계획의 적정성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대안설정·분석의 적정성	○ 계획지구 및 주변 지역	
입 지 의 타 당 성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 계획시행으로 인해 동·식물의 자연환경과 서식환경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 계획지구 및 주변 지역(0~300m이내)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 계획시행으로 인한 지형·지질 변화 및 생태축 단절이 예상되는 지역	○ 계획지구 및 주변 지역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계획시행으로 인한 경관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 계획지구 및 주변 지역
	수환경의 보전	○ 계획시행으로 인해 수환경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및 주변수계	○ 계획지구 및 주변 수계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 계획시행으로 인한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변화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대기질 : 500m, 수질 : 계획지구 및 주변수계, 소음·진동 : 300m	○ 계획지구 및 주변 지역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계획지구 주변 지자체 환경기초시설 현황 검토	○ 계획지구 및 주변 지자체
	자원·에너지순환의 효율성	○ 계획시행으로 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및 지자체 처리계획 검토	○ 계획지구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계획시행으로 인한 토지이용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 계획지구	



구분	평가대상지역	
1. 계획의 적정성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2. 입지의 타당성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가. 자연환경의 보전	1)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0~300m이내)
	2) 지형 및 생태축 보전	계획지구 및 주변산계
	3) 자연경관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4) 수환경 보전	계획지구 및 주변수계
나. 생활환경의 안정성	1) 환경기준 부합성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대기질 500m 소음 진동 300m)
	2)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계획지구 및 주변지자체
	3) 자원·에너지순환의 효율성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다.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토지이용	계획지구

<그림 3-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도

3.2 대안의 설정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대안 종류 및 방법을 선정하였음.
 - 「대안」이라 함은 일정의 목적(환경목표의 달성)을 전제로 하여 해당 개발계획의 위치, 규모, 공법, 시기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조건을 변경하여 각각의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비교·검토하는 것임.
 - 「대안의 설정」은 토지이용계획, 사업입지, 사업규모, 사업시기 등을 대상으로 하고 대안의 평가는 이를 가능한 정량화하고 타당성이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평가 기법 또는 해석기법 등을 이용하여야 함.
- 금회 개발 계획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 비교”, “입지 및 토지이용” 측면에서 대안을 설정하였음.

<표 3.2-1> 대안의 종류 및 대안 선정방법

대안종류	대안채택	대안제외	사유
계획 비교	○	-	○ 해당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가능한 상황(No action)과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을 비교하여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 필요
입지 및 토지이용	○	-	○ 토지이용계획(안)의 비교를 통하여 최적의 토지이용 계획 수립
수요와 공급	-	○	○ 개발에 관한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수요·공급량(규모)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설정
수단과 방법	-	○	○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등을 대안으로 설정
시기와 순서	-	○	○ 개발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시행시기 및 진행순서 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설정
기타	-	○	○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또는 기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안

3.3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설정

가. 평가항목 설정

- 계획지구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을 선정하였음.

<표 3.3-1> 평가항목 선정

평가분야 및 평가항목		평가항목의 설정			
		중점 평가	현황 조사	제외 항목	사유
1.. 계획의 적정성					
가. 상위 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	-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평가 필요
나. 대안설정·분석의 적정성		○	-	-	○ 각 대안의 설정 및 분석을 통하여 계획의 적정성 평가 필요
2. 입지의 타당성					
가. 자연환경의 보전	1)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	-	○ 각종 보호지역 영향, 동·식물 서식지 및 다양성 변화, 보호생물종 영향 평가 필요
	2) 지형 및 생태축 보전	○	-	-	○ 계획시행으로 인한 주요 산림축의 훼손, 지형 및 생태축 단절 여부 등 검토 필요
	3) 자연경관	○	-	-	○ 계획시행으로 계획지구 및 주변 경관 영향 평가 필요
	4) 수환경 보전	○	-	-	○ 수환경 관련 보호지역에 직·간접적 영향에 대한 검토
나. 생활환경의 안전성	1). 환경기준 부합성	○	-	-	○ 환경기준 등의 유지달성 평가 필요
	2)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	-	○ 환경기초시설 현황과악
	3)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	-	○ 계획시행시 폐기물 발생량 및 적정 처리 필요
다. 사회·경제환경 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	-	○ 계획시행시 토지이용변화 평가 필요

나. 현황조사 범위 및 방법

- 환경영향 평가항목 중 본 계획시행에 따른 영향을 비교·분석하여 위하여 현황조사가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여 아래와 같이 현황조사계획을 수립하였음.

<표 3.3-2> 평가항목별 현황조사 범위 및 방법

설정된 평가항목	현황조사 범위 및 방법				사 유	
	공간적 범위	내용적 범위	시간적 범위	조사 방법		
1. 계획의 적정성						
가.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평가 대상지역	<표 7.2-2> 참조	계획의 시행기간	문헌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간적 범위)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내용적 범위) : 작성 규정 별표4. 제 2호에 따른 현황조사의 조사항목 ○(시간적 범위) : 관련계획 수립기간 ○(조사방법) : 관련계획 문헌 	
나.대안설정·분석의 적정성	평가 대상지역	대안별 평가지표	계획의 시행기간	문헌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간적 범위) : 계획지구 ○(내용적 범위) : 대안 선정 항목 ○(시간적 범위) : 대안 선정 기간 ○(조사방법) : 관련계획 문헌 	
2. 입지의 타당성						
가. 자연 환경의 보전	1)생물 다양성·서식지 보전	평가 대상지역	<표 7.2-2> 참조	최근 5년간	국가 DB, 문헌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간적 범위)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내용적 범위) : 작성 규정 별표4. 제 2호에 따른 현황조사의 조사항목 ○(시간적 범위) : 계획의 수립기간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육상·수생태계	총 2회	현지 조사	
	2)지형 및 생태축 보전	평가 대상지역	<표 7.2-2> 참조	계획의 수립기간	문헌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간적 범위)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내용적 범위) : 작성 규정 별표4. 제 2호에 따른 현황조사의 조사항목 ○(시간적 범위) : 계획의 수립기간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계획지구 현황 파악
				-	현지 조사	

<표 3.3-2> 평가항목별 현황조사 범위 및 방법(표 계속)

설정된 평가항목		현황조사 범위 및 방법				사 유
		공간적 범위	내용적 범위	시간적 범위	조사 방법	
가. 자연 환경의 보전	3) 자연경관	평가 대상지역	<표 7.2-2> 참조	계획의 수립기간	문헌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간적 범위)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내용적 범위) : 작성 규정 별표4. 제2호에 따른 현황조사의 조사항목 ○(시간적 범위) : 계획의 수립기간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계획지구 현황 파악
	4) 수환경 보전	평가 대상지역	<표 7.2-2> 참조	-	현지 조사	
나. 생활 환경의 안전성	1) 환경기준 부합성	평가 대상지역	<표 7.2-2> 참조	계획의 수립기간	국가 DB, 문헌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간적 범위)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내용적 범위) : 작성 규정 별표4. 제2호에 따른 현황조사의 조사항목 ○(시간적 범위) : 계획의 수립기간 ○(조사방법) : 문헌자료 -대기질 : 500m, 소음·진동 : 300m -수질 : 계획지구 및 주변수계
			지표수질 16개항목	총 2회	현지 조사	
			대기질 8개항목 소음·진동 (주간 야간)			
2) 환경기초 시설의 적정성	평가 대상지역	<표 7.2-2> 참조	계획의 수립기간	문헌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간적 범위)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내용적 범위) : 작성 규정 별표4. 제2호에 따른 현황조사의 조사항목 ○(시간적 범위) : 계획의 수립기간 ○(조사방법) : 문헌자료 	
3)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평가 대상지역	<표 7.2-2> 참조	계획의 수립기간	문헌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간적 범위)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내용적 범위) : 작성 규정 별표4. 제2호에 따른 현황조사의 조사항목 ○(시간적 범위) : 계획의 수립기간 ○(조사방법) : 관련계획 문헌 	
다.사회·경제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조화성	평가 대상지역	<표 7.2-2> 참조	계획의 수립기간	문헌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간적 범위)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내용적 범위) : 작성 규정 별표4. 제2호에 따른 현황조사의 조사항목 ○(시간적 범위) : 계획의 수립기간 ○(조사방법) : 관련계획 문헌 	

<표 3.3-3> 평가항목별 현황조사 항목

평가분야 및 평가항목	현황조사 항목
1. 계획의 적정성	
가.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관련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및 관련 계획과의 조화성 검토
나.대안설정·분석의 적정성	○ 대안의 종류, 설정된 각 대안 종류별 시나리오 구성, 최종 대안 평가에 필요한 요소 또는 지표 등
2. 입지의 타당성	
가. 자연 환경의 보전	<p>1)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물종 및 생물다양성 보호지역 :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등 - 육상생태계 : 일반 생물종(동·식물상) 분포 및 서식 현황, 법정 보호종 등 주요 생물종의 분포 및 서식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보호종(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특정군락, 천연기념물, 희귀종 서식지, 철새도래지 등 - 수생태계 : 일반 생물종(동·식물상) 분포 및 서식 현황, 법정보호종 등 주요 생물종의 분포 및 서식현황 - 생태자연도 1등급, 식생보전등급, 국토환경성평가지도 1·2등급 지역 등
	<p>2)지형 및 생태축 보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형 유형 : 산지, 구릉지, 하천 등 - 특이한 지형 : 계곡, 협곡 등 - 지형 형상 : 표고, 경사도, 산줄기 등 - 지반 : 지반 불안정지역, 연약지역 등 - 지형보전 등급 - 학술적·문화적 또는 자연환경보전 가치가 있는 지형 - 능선·계곡 등 야생동물의 주요 이동로 - 국가 핵심생태축 : 4대 핵심 생태축(DMZ, 백두대간, 도서연안, 5대강 수생태축) - 광역생태축 - 도시연결 생태축 : 도시·군기본계획 상의 보전축 - 백두대간 정맥 - 도시·생활공간 생태축, 주요 산림 생태축, 수변생태축

<표 3.3-3> 평가항목별 현황조사 항목(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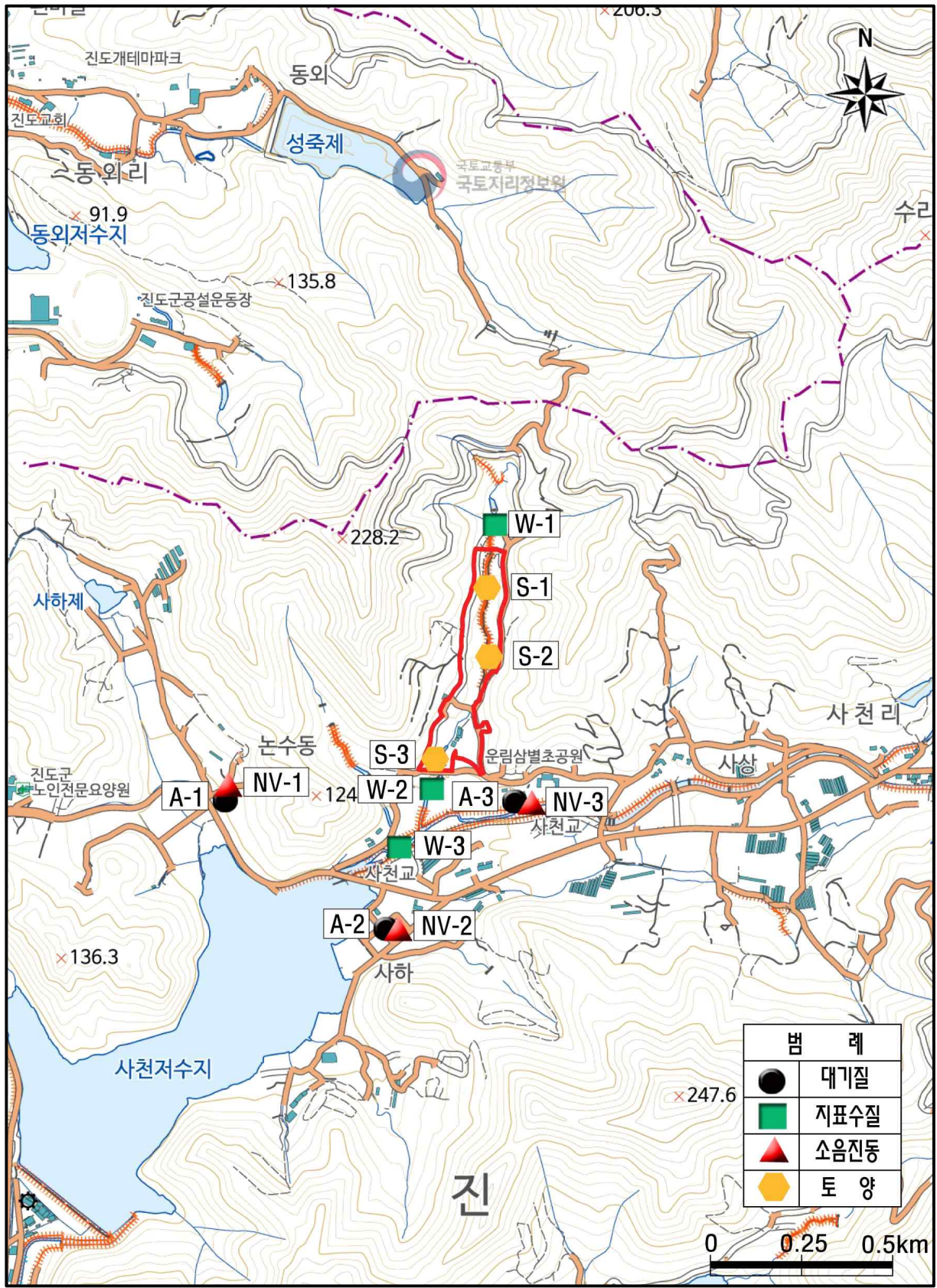
평가분야 및 평가항목		현황조사 항목
가. 자연 환경의 보전	3)자연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경관 보전 용도지역 : 생태경관 보전지역, 자연·수변경관 지구 등 - 경관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 하천, 계곡, 호소 등 - 주요 조망점(도로, 등산로, 전망대, 시가지 등) 및 조망상황 - 스카이라인과 스카이라인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 주요경관 자원 : 경승지, 폭포, 랜드마크(대표·상징경관), 기암석, 사적, 사구, 역사·문화 자원 등
	4)수환경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환경 보호지역 :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나. 생활 환경의 안전성	1)환경 기준 부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질 등의 국가·지역 환경기준 및 현황(문헌조사) - 환경기준 유지달성을 위해 국가 등이 설정한 환경목표기준 및 현황 - 주변 정온시설 현황 - 수계 및 하천수질 현황
	2)환경기초 시설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기초시설 현황
	3)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 처리현황 및 처리대책 검토 - 계획수립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 검토
다.사회· 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평가항목별 환경보전대책 중 토지이용계획안에 반영된 내용

다. 조사항목 및 조사지점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환경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현지조사 계획을 수립하였음.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환경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계획지구 및 주변에 분포하는 주거 지역, 시설물 등을 측정지점으로 선정하였음.

<표 3.3 - 4> 평가항목 조사계획(현지조사)

구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횟수
동·식물상	○ 식물상 및 식생, 육상동물상(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육상곤충류), 육수생물상(어류, 저서성대형 무척추동물)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2회
대기질	○ PM-10, PM-2.5, NO ₂ , SO ₂ , CO, O ₃ , Pb, 벤젠(8개 항목)	3지점	2회
지표수질	○ COD, DO, SS, T-P, Cd, CN, Pb, Cr ⁶⁺ , As, 분원성대장균군, TOC, Hg, PCB, 유기인, 음이온계면활성제, 총대장균군 (16개 항목)	3지점	2회
토양	○ Cd, Cu, As, Pb, Hg, Zn, Cr ⁶⁺ , Ni, F, 유기인화합물, PCB, CN, 페놀, BTEX, TPH, TCE, PCE (17개 항목)	3지점	2회
소음·진동	○ 소음(주간4회, 야간 2회) ○ 진동(주간2회, 야간1회)	3지점	2회



<그림 3-1> 측정지점 위치도
 주) 측정지점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가능

제4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계획

4.1 주민 등의 의견수렴 근거 및 절차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의거, 주민 등의 의견수렴 시행할 계획임.

<표 4.1-1> 주민의견수렴 근거

구 분	관련법	내 용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주민 등의 의견수렴)	①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자료: 환경영향평가법, 법제처

4.1.1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본 계획의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정보통신망 또는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http://www.eiass.go.kr>)을 이용하여 14일 이상 공개할 것임.

4.1.2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고·공람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의거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시행할 것임.

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고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고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본 계획의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정보통신망 또는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을 이용하여 공고할 계획임.
- 또한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공람기간 및 장소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할 계획임.

- 공고내용
 -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의 제출 시기 및 방법
 - 설명회 일시, 장소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람은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본 계획의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정보통신망 또는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에 요약서를 공개하여 공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또한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공개하여 공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대상지역 내에 위치하는 시·군·구와 협의하여 해당 읍·면·동사무소 등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비치하여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공람장소는 추후 협의).
- 공람장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과 함께 ‘주민의견 제출서’ 양식을 비치할 계획임.

4.2.3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 주민설명회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공람기간 중 1회 실시하며, 설명회 일시 및 장소는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는 초안 공람 공고시 개최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토록 할 계획임.
- 또한 주민설명회 개최 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6조1항에 의거하여 공청회 개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임.

4.2.4 설명회 또는 공청회의 생략

- 설명회 또는 공청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생략공고 등의 조치를 취할 것임.
 - 설명회를 생략한 경우

- 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
- 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등을 게시
 - 공청회를 생략한 경우
 - :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

4.2.5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 14일 이상 게시할 계획임.

제5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5.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

- 주관부서 : 진도군 관광과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내용 : 인문치유 관광루트 명소화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 심의위원 : 8인

<표 5.1-1> 협의회 위원

구 분		소 속	성 명
위원장	관계 행정기관	진도군 관광과	최00
위 원	협의기관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김00
위 원	계획수립기관 공무원	신안군 관광과	김00
위 원	위원장 위촉 민간전문가	(주)정원평가기술단	양00
위 원	협의기관 추천 전문가	환경평가본부 국토정책평가실	허00
위 원	지자체 소속 공무원	진도군 환경수질과	박00
위 원	주민대표	진도군 의신면 사천리 주민대표	주00
위 원	시민단체 추천 민간전문가	그린진도21	전00

5.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별 심의의견

가.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인문치유 관광루트 명소화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괄의견

- 본 사업은 전남 진도군 의신면 사천리 569번지 일원에 운림산방, 운림예술산과 침찰산, 운림산림욕장에서의 휴식과 치유의 관광루트 개발을 하기 위해 추진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동 심의의견은 최대한 심의결과에 반영하고, 결정된 심의결과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작성하여야 함
- 동 심의결과를 반영·작성한 평가서의 세부적인 검토과정에서 해당사업으로 인한 불가피한 환경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 결정된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을 조정하여야 함
- 평가서상의 모든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이어야 하며, 조사방법(지점 선정, 예측 조건, 예측 사용된 수치 등)에 대한 산정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3-72호, '23.4.13.)」 및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환경부, 2024.1.)」 등에 따라 충실히 작성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동 사업 시행으로 인해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는 최대한 확대·설정하여야 함
 - 주변에 공사 중이거나 계획이 확정된 사업 현황을 조사하여 누적평가 실시
 - 동·식물상의 경우 서식지 환경, 활동 반경, 계절적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평가대상 지역에 대한 범위 설정
- 대상지역 설정 시 설정 사유를 상세히 명기하고, 환경영향의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등 관련자료 및 사용근거 등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2.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 없음

3. 대안

- 사업지역에 대한 기존 개발계획,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부합성, 적정성 등을 제시하여야 함

4. 평가항목·범위·방법 등

【공통사항】

- 환경현황 조사지점은 공사 및 운영 시 영향예측 지점을 고려해 각 항목별 환경현황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을 선정하고, 항목별 조사 시기를 설정·제시하여야 함

- 평가항목 중 사업 시행으로 인해 악영향이 큰 항목은 중점평가항목으로 선정하고 평가대상지역 범위 및 조사시기 등을 확대하여 공사 및 운영 시 환경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저감대책 수립·제시하여야 함

【자연환경의 보전】

-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조사는 중 출현(활동)이 왕성한 계절을 반드시 포함하여 계절적 이동 및 서식활동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범위, 시기, 방법 등을 수립하여야 함
 - 법정보호종 등 보호 가치가 높은 종의 서식 여부 및 영향, 특히 계절별 현황(종류, 서식밀도, 서식지 등) 및 사업시행으로 인해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구체적인 저감 대책 수립
 - 야생동물의 이동로가 되는 능선 및 계곡 등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영향 여부 분석·제시
 - 동·식물상 항목은 현지조사, 문헌 및 청문조사를 병행하여 조사하되, 문헌조사의 경우 사업지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지역을 중심으로 최근 5년 이내의 조사자료 (각종 동·식물상 조사 보고서, 타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등 최소 5개 이상) 활용하여 그 결과 제시
 - 훼손수목 산정결과에 대하여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정근거(식생조사표 등) 제시
 - 생태자연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을 현황도에 중첩하여 표시하고 영향 예측을 통해 구체적인 저감방안 수립·제시
 - 야간조명 사용 여부를 제시하고 야간조명 사용으로 인한 생태계 및 주변 정온 시설에 미치는 영향 예측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적정 저감방안 검토·제시 등
-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공사 시 사토 처리계획 또는 부족토 공급계획 수립, 절·성토 사면 최소화 방안 및 복원계획 등을 수립하여 재해예방 및 산지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자연경관의 보전) 근경, 중경, 원경을 포함한 주요 조망점을 선정하여 사업 시행으로 인한 경관 변화 등 영향을 예측하고 저감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수환경의 보전)
 - 공사 및 운영 시 사업 시행으로 인한 수계(하천 등)에 미치는 환경 영향(비점오염물질, 오수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시행 시 용수공급과 오수처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생활환경의 안정성】

- (대기질) 대기질 현황조사는 기존자료(타 사업 평가서, 국가대기측정망 등) 조사와 현지조사 병행
 - 주변 정온시설 현황(이격거리 포함)을 현황도에 증첩하여 표시하고, 공사·운영 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여 구체적인 저감방안 수립·제시
- (온실가스) 공사·운영 시 온실가스 항목을 포함하여 예측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한 후 영향예측 및 이에 대한 걱정 저감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저공해 기계 및 저탄소 자재 사용, 녹지 조성 확대 등 탄소배출은 줄이고 탄소흡수를 늘리는 탄소중립방안 별도 수립·제시 등
- (소음·진동)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소음·진동 피해가 우려되는 모든 정온시설 분포 현황을 도면(사진 포함)과 표를 사용하여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함
 - 공사 및 운영 시 구분하여 영향이 예상되는 정온시설에 대한 현황 및 위치(수평/수직 이격거리 등) 등 명시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통해 가급적 많은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수립된 의견이 동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주민의견 수렴 공고·공람 및 설명회 시 사업에 따른 환경적인 영향과 공청회 개최요건, 절차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알기 쉬운 평가 요약서’ 작성·비치
- ※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참고

6. 기타 사항

- 동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에서는 상기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반영하고, 반영이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의 공정한 거래정착을 위한 운영지침」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용역 등의 원도급 및 하도급률 검토서”를 작성·제시하여야 함

2025. 5. 26.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영산강유역환경청 주무:

나. 진도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인문치유 관광루트 명소화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총괄 의견

- 본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군 관리계획(변경)에 따른 개발기본계획 성격을 지닌 평가로 다음 의견을 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등에 참고하시기 바람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환경보전목표는 환경관련 법령 및 기준등을 준수하여 설정하여야함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설정 하여야함

3. 토지이용 구상안

- 사업 대상지에서 하류지역에 토사유출 등이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저감대책을 세우기 바람

4. 대안

- 대안 설정시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제시된 내용을 고려하여 대안 종류는 3개 이상 설정하고 설정된 각 대안의 종류별로 2개 이상의 시나리오 구성안을 설정하고 그 사유를 제시하시기 바람

5.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환경영향평가법”에 제시된 세부 평가항목에 기반하고, 사업의 특성,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여야함

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관련 법규 및 절차를 준수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제시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함

7.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의견없음

2025. 4. 21.

심의위원



다. ㈜정원평가기술단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인문치유 관광루트 명소화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괄 의견

- 본 계획은 인문자원(운림산방 등)과 자연치유자원(운림산림욕장 등)을 연계하는 '인문+치유 관광루트 연계사업'으로 급회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사항이므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용도지역 변경 사유에 대해 조서 사유 외에 관련 법규 상 변경이 수반될 수 밖에 없는 사유를 상세히 제시하시기 바람.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휴양시설, 교양시설 설치로 오수가 발생할 경우 우수처리수(방류수)가 하류부 사천저수지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시기 바람.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없음.

3. 토지이용 구상안

- 대상지내 양호한 식생지역과 보전가치가 높은 자연지형 등은 최대한 보전하는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하시길 바람

4. 대안

- 대안 설정 시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3-72호)」에 제시된 내용을 고려하여 대안 종류는 3개 이상 설정하고, 설정된 각 대안의 종류별로 2개 이상의 시나리오 구성안을 설정하고 그 사유를 제시하시기 바람.

5.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자연생태계 현지조사는 동·식물상 생육활동이 왕성한 시기를 포함하여 실시하시기 바람.
- 사천저수지 수질 현황은 현지조사가 어려울 경우 문헌조사자료(한국농어촌공사 수질 측정 자료 인용 등)를 제시하여 수질 상태가 파악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공사 시, 운영 시 사천저수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는 저감방안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시기 바람.

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환경영향평가법에 준하여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람.

7. 기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소하천(6,537.4m²)를 포함하고 있는 바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람.
- 조정시설 계획 시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한 수준으로 조정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람.

2025. 04. 23.

심의위원



라. 환경평가본부 국토정책평가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인문치유 관광루트 명소화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총괄 의견

- 본 건은 인문치유 관광루트 명소화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심의한 의견으로, 아래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를 내실있게 수행할 필요가 있음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항목의 목표에는 생태·자연도 1등급 및 별도관리구역, 식생 보전등급 I, II등급 지역, 주요 생태축·녹지축 등의 보전이 포함되어야 함. 또한 “지형·지질” 및 “자연경관” 항목에는 주요 산줄기와 스카이라인 보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수질, 대기질, 소음·진동 등의 항목은 구체적인 조사지점을 선정하고, 이를 도면에 명확히 표기할 필요가 있음

3.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없음

4. 대안

- 의견없음

5.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의견없음

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의견없음

7.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의견없음

2025. 4. 18

심의위

마. 진도군 환경수질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인문치유 관광루트 명소화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괄 의견

- 본 사업은 의신면 사천리 569번지 일원에 조경시설, 휴양시설, 교양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의신면 사천리 마을과 저수지 등에 직·간접적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공사중 발생하는 소음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바 대상지역을 야생생물보호구역인 첩찰산 주변에 대하여는 추가 확대 설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확대 설정 시 지자체 협의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대상지역 설정이 필요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적정함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대상지역은 계획수립으로 인해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범위를 설정하고 환경영향의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등의 관련 자료와 사용근거 등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주변에 공사 중이거나 계획이 확정된 사업 현황을 조사하여 누적평가 실시
 - 동·식물상의 경우 서식지 환경, 활동 반경, 계절적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평가대상 지역에 대한 범위 설정
3. 토지이용 구상안
 - 시설물 설치 시에는 과도한 지형·경관 변화를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시설물 배치는 기존 경관과 조화롭게 설계하여야 함
4. 대안
 - 계획의 성격, 주변의 환경적인 요소 등을 비교·검토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제시하여야 함
5.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동·식물상) 조사는 종 출현(활동)이 왕성한 계절을 포함하여 야생생물의 계절적 이동 및 서식활동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범위, 시기, 방법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법정보호종 등 보호가치가 높은 종의 서식 여부 및 영향, 특히 계절별 현황(종류, 서식지 등) 및 사업시행으로 인해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구체적인 저감대책 수립·제시
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공고·공람 및 설명회를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민원 등의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제시된 의견이 사업계획에 반영될수 있도록 하여야 함
7.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사업시행에 따른 외부인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지역내 환경 수용 능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상기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반영하고, 반영이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2025. 5. .

심의위원



바. 진도군 의신면 사천리 주민대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인문치유 관광루트 명소화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총괄 의견

- 본 계획은 치유숲 공원조성 개발로 주변 지역 관광명소와 연계하여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성이 입증되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어 관련 법령에 근거한 계획시행으로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야함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환경보전목표는 적절함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은 적절함
3. 토지이용 구상안
 - 적절함
4. 대안
 - 토지이용 합리화 및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제시하여야함
5.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설명회 등 주민들의 의견수렴시 다양한 방법(발표자료, 배포자료 등)을 활용하여야함
7.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의견없음

2025. 4. .

심의위원



사. 시민단체(그린진도2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인문치유 관광루트 명소화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괄의견

- 상위계획과 관련계획의 개발방향과 환경보전 목표에 부합하는 계획을 수립하여야하며, 과도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예측이 필요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해당 계획 전체에 적용할 지속가능한 발전 및 환경보전 영향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여야함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평가대상지역 설정은 적절함

3. 토지이용 구상안

- 시설용지별 규모는 시설의 이용현황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반영하고, 주변 자연환경 및 기존 시설 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함

4. 대안

- 세부계획 확정시 주변 환경현황을 고려하여 환경친화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함

5.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조사·예측·평가방법은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충실히 조사하여 제시하여야함

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통해 가급적 많은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수렴된 의견이 등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7. 기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의견없음

20 . . .

심의위

